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1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565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5구합53545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10. 6.
판 결 선 고	2016. 11. 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5. 10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2015. 10. 2기분 창업중소기업 168,672,81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15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<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>

○ 제2면 제11행 "대표이사"를 "대표자"로 고치고, 제17행 "6,450,520" 다음에 "원"을 추가한다.

○ 제4면 제3행 "업태"를 "종류"로, 제8행 "업태"을 "사업의 종류"로, 제9행 "같은 날 자동차용 동력장치 제조업으로"를 "같은 날 업종을 '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'으로 하여"로, 제11행 "대표이사"를 "대표자 사내이사"로 각 고친다.

○ 제7면 제14행 "대표이사"를 "대표자"로 고친다.

○ 제10면 제1행 "취득세를"을 "취득세의"로 고친다.

2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형식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